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5
----------	------------

제출년월일 : 2008. 08. .

제출자 : 속초시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안 제8조)

- 1)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사항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쪽)
- 2) 입법예고 : 2008. 7. 25 ~ 8. 13, 특기할 사항 없음
- 3) 관련법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4쪽)
- 4) 참고자료 (5쪽)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15인”을 “11인”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u>15인</u>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생략) 1. <u>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여성가족과장</u>	제3조(위원회 구성) ① _____ _____ <u>11인</u> _____ _____ -----. ② (현행과 같음) 1. <u>당연직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u>

관련법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참고자료

○ 타 자치단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단 체 명	구성인원		단 체 명	구성인원		비 고
	위원수	당연직		위원수	당연직	
춘천시	15	5	서울 종로구	11	5	
원주시	15	5	용산구	12	6	
강릉시	15	5	서초구	11	5	
동해시	15	8	부산 중 구	9	4	
태백시	15	7	동래구	12	4	
홍천군	9	5	해운대	9	5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구 중 구	9	4	
영월군	10	5	수성구	9	4	
평창군	15	6	인천 중 구	9	4	
정선군	15	7	대전 동 구	9	4	
철원군	15	6	대덕구	9	4	
인제군	15	8	경기 수원시	10	4	
고성군	15	6	충남 부여군	9	4	
양양군	15	7	경북 영주시	9	3	

속초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신설 2003.12.29 조례 제1890호]

개정 2006.07.14 조례 제2006호

개정 2007.04.13 조례 제2060호

개정 2008.01.28 조례 제2118호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이하"시"라 한다)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7.10>

제2조(지원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법률,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개정 2006.07.10>
2. 제1호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3.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4.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 ①시장은 매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 및 심사) ①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조정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 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할 수 있으며, 상반기 심사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총액의 70퍼센트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여성가족과장 <2007.04.13개정, 2008.01.28개정>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 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소속 사회단체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위원 회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를 처리한다.

제12조(실무심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회단체보조금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실무계획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 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별도계정의 설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7.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0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복지기획담당”을 “생활지원담당”으로 한다.

② 「속초시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③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산림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산림관리과장”으로 한다.

⑤ 「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산림관리과장”으로 한다.

⑥ 「속초시재난관리기금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재난담당”을 “재난지원담당”으로 한다.

⑦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중 “복지기획 실무자”를 “서비스연계 실무자”로 한다.

부칙(개정 2008.0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